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를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 중 "체력관리담당관 1인과 체력교관 1인"을 "체력관리담당관과 체력교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력관리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력관리담당관을 보좌하여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체육이론교육"을 "체력단련 이론 및 실습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체육활동"을 "체력단련"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체력검정 운영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력검정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9조 및 제11조 따른 체력검정 대상자와 평정점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 조치할 수 있다.

④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7조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또는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서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체력단련을 시킬 수 있다.

제7조의2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소방감 이하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방준감 이상"을 "연령정년 5년 미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임신중"을 "병역휴직 및 육아휴직 중인 사람, 임신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질병 등 신체장애"를 "질병, 신체장애 등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신체 장애 등 그"를 "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소방활동 중 공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6. 경조사,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12조제1항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임신 중, 출산·유산)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치료 또는 요양 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체력검정 측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2항제6호의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를 "제7조의2 또는 제9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3호) 본문 중 "제9조제2항제4호·제5호·제6호 및 자율실시자 중 불참한"을 "제9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를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된"을 "되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제1항 자율실시자 중 불참한 사람은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4.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점

6. 제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미실시한 경우의 평정점은 체력검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⑤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은 없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전자인사시스템에 입력·관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중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을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9조제2항제2호는 2024년 체력검정부부터 적용하고 2024년 하반기 평정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생략) 3. “체력관리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의) ----- ----- --. 1. 2. (현행과 같음) 3.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
제5조(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지정)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u>체력관리담당관 1인과 체력교관 1인</u> 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지정) ----- ----- ----- ----- -- <u>체력관리담당관과 체력교관</u> ----- -----.
제6조(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직무) ① 체력관리담당관은 <u>체력관리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u>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② 체력교관은 <u>체력관리담당관을 보좌하여</u>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략)	제6조(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직무) ① ----- -- <u>다음 각 호</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u>다음 각 호</u> ----- ----- ---. 1. (현행과 같음)

2. 체력단련시간을 이용한 체육 이론교육

3. 기타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7조(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실시) ①·② (생략)

③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의 일상업무 시간의 일부를 이용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체력단련을 시킬 수 있다.

<신설>

2. ----- 체력 단련 이론 및 실습교육·훈련

3. ----- 체력단련-----

제7조(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체력검정 운영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력검정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9조 및 제11조 따른 체력검정 대상자와 평정점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 조치할 수 있다.

④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7조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또는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서 소속 소방공무

제7조의2(체력검정 실시의 예외)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소속 소방공무원
 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체
 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
 다.

제9조(체력검정대상자 등) ① 체
 력관리기관의 장은 소방감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이하 “자율실시자”
 라 한다)은 자율 실시할 수 있
 다.

② 체력검정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육아휴직 및
병역휴직 중인 사람

원에 대하여 체력단련을 시킬
수 있다.

제7조의2(체력검정 실시의 예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

제9조(체력검정대상자 등) ① --
 ----- 소방공무원 --

 ----- . ----- 연령정년 5년 미
만의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소방활
동 중 공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3.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사람
 5. 휴직(제2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6.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사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사람
 7. 신체 장애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제2항 제3호·제4호에 따라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의사 진단서를 제12조제1항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체력검정 측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병역휴직 및 육아휴직 중인 사람, 임신 중-----
4. 질병, 신체장애 등 사유-----
5. ---제3호-----
6. 경조사,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
7. 그 -----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12조제1항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임신 중, 출산·유산)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치료 또는 요양 기간을 포함한다)

제11조(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①·② (생략)

③ 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현 계급에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부여한다.

1. 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임용권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제7조의2에 따라 일부만 실시한 경우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

또는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체력검정 측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2항제6호의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제7조의2 또는 제9조제2항제6호-----

정지수 포함)로 한다.

<신 설>

2. (생략)

<신 설>

3. 제9조제2항제4호·제5호·제6호 및 자율실시자 중 불참한 사람 :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연도 체력검정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원 요양 승인이 결정된 경우 해

-----.

2. 제9조제1항 자율실시자 중 불참한 사람은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점

5. 제9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 -----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 되었거나,

당 평정단위기간의 체력검정 성적 평정점을 임용권자별 해당 평정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희망자만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로 소급하여 부여한다.

<신 설>

④ (생략)

<신 설>

제12조(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

--.

6. 제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미실시한 경우의 평정점은 체력검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은 없음으로 한다.

제12조(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관

리)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개인별로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를 별지서식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평가단위를 달리 하는 기관·부서로 전보시에 제1항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체력검정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체력검정 결과를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연도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반영한다.

리) ① -----

----- 기록하고, 그 내용을 전자인사시스템에 입력·관리한다.

<삭 제>

제13조(체력검정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

-----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력단련”이란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적 운동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체력검정”이란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별표의 체력검정 점수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력관리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제4조(체력관리계획의 수립)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연도 개시 전까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포함한 체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체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력단련의 시간, 장소, 내용
2. 체력검정의 일시, 방법 등 제반 절차

3. 기타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지정)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체력관리담당관과 체력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직무) ① 체력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계획 수립과 지도·감독
2. 체력검정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기타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체력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 시행
2. 체력단련시간을 이용한 체력단련 이론 및 실습교육·훈련
3. 기타 체력증진 및 체력단련에 필요한 사항

제7조(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실시)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매년 4~5월중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미실시자에 대하여 개인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체력검정 운영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력검정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9조 및 제11조 따른 체력검정 대상자와 평점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 조치할 수 있다.

④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7조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또는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서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체력단련을 시킬 수 있다.

제7조의2(체력검정 실시의 예외)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소속 소방공무원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체력검정시설 및 설비)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체 시설 및 설비가 확보되지 못한 기관의 장은 인근 시설을 지정하여 체력검정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9조(체력검정대상자 등)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다만, 연령정년 5년 미만의 소방공무원(이하 “자율실시자”라 한다)은 자율 실시할 수 있다.

② 체력검정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력

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해당연도 체력검정 기간 중 평가가 불가능한 사람
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소방활동 중 공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병역휴직 및 육아휴직 중인 사람,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질병, 신체장애 등 사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사람
5. 휴직(제3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6. 경조사,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12조제1항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임신 중, 출산·유산)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치료 또는 요양 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체력검정 측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2항제6호의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10조(체력검정 종목 등) ① 체력검정은 다음 각 호의 6개 종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 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

1. 악력(kg)
2. 배근력(kg)
3.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4. 제자리멀리뛰기(cm)
5. 윗몸일으키기(회/분)
6. 왕복오래달리기(회)

②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체력검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①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점수 기준표(연령대별 보정치 포함)는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정 점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하여 부여하되, 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체력검정 취득점수 / 14
2. 체력검정 취득점수가 70점을 넘는(연령대 보정치 가산) 경우에는 5점

③ 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현 계급에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부여한다.

1. 제7조의2 또는 제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임용권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제7조의2에 따라 일부만 실시한 경우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로 한다.
2. 제9조제1항 자율실시자 중 불참한 사람은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3.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49점(평정점 3.5점)으로 한다.
4.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점
5. 제9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연도 체력검정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원 요양 승인이 결정 되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평정단위기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임용권자별 해당 평정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희망자만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로 소급하여 부여한다.

6. 제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미실시한 경우의 평정점은 체력검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체력검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0점으로 부여한다

⑤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은 없음으로 한다.

제12조(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관리)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개인별로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를 별지서식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전자인사시스템에 입력·관리한다.

② 삭제

제13조(체력검정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체력검정 결과를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연도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반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9조제2항제2호는 2024년 체력검정부터 적용하고 2024년 하반기 평정에 소급하여 적용한다.